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3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이수진·추미애·문진석

김준혁 • 서미화 • 전종덕

황정아 · 권향엽 · 장종태

신장식 • 문정복 • 임미애

김문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일정 규모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럼에도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불법 영상물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. 또한,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 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

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,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11 신설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·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11(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수사 협조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 및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과 기술적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4(자율규제) ①・② (생	제44조의4(자율규제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
	적인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
	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
	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
	라인의 개선・보완을 권고할
	<u>수 있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4조의11(불법촬영물등에 대한
	수사 협조) ① 정보통신서비스
	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과 관련
	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
	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
	물등을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
	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	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
	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
	조치를 취할 수 있다.
	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
	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
	른 자료의 보존 및 기술적 조

<u>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</u>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 과 기술적 조치 및 제2항에 따 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